

중대재해 사건 처리율은 매년 상승 중, 노동부는 모든 중대재해 사건을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음

1. 관련 기사

- 5.19.(화) 경향신문, “중대재해 조사만 ‘1년’… 장기 미제사건 쌓이고 쌓여간다.” 기사 관련

<주요 기사 내용 >

- 노동부, 4년간 662개 사건 처리..40%가 조사에서만 ‘1년 이상’ 소요
- 전문가 “노동부 감당 범위 넘어”...‘소규모 사건’ 후순위 적체 우려도

2. 설명 내용

- 노동부는 중대재해 발생 시 형사소송법 및 특별사법경찰관 수사준칙 등에 따라 검찰의 수사 지휘하에 현장 조사, 증거자료 확보 및 관계자 조사, 법리 검토 등을 거쳐 사건을 송치 또는 종결 처리하고 있음
 - 기사에서 언급된 ‘평균 1년’은 송치 또는 종결까지 소요되는 모든 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, 단순히 노동부 조사에만 1년이 소요되는 것이 아님
- 노동부는 신속한 수사 처리를 위해 근로감독관 교육 강화 및 인력 증원*, 노동부 - 검찰 수사협의회(검찰 수사지휘 평균 2.4회) 등을 진행 중임
 - * 근로감독관 정원: ’22.1월 100명 → ’24.1월 138명 → ’24.7월 233명 → ’26.2월 529명
 - 감독관 수사역량·수사기법 향상 등으로 중대재해 사건 처리율은 매년 상승하고 있으며, 향후에도 동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
 - * 사건처리율(처리사건/발생사건): ’22년 22.7%, ’23년 34.3%, ’24년 35.2%, ’25년 42.4%
 - 또한, 중대재해 사건 수사는 사망자 수사업장 규모 등과 무관하게 엄정하게 진행 중인 만큼,
 - 사회적 관심사에서 벗어나거나 사망 규모가 작은데 비해, 내용이 복잡한 사건을 후순위로 둔다는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름

- 한편, 중대재해처벌법 사건은 일반적인 형사·노동사건과 달리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여부, 고의·인과관계 등 입증을 위해 기업 안전보건관리체계 전반의 방대한 자료 검토가 불가피하여 수사에 일정 기간이 소요되는 측면이 있음

담당 부서	안전보건감독국 중대산업재해수사과	책임자	과 장	이경제 (044-202-8950)
		담당자	사무관	정해엽 (044-202-8953)

